

第47回

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
本會議會議錄

第2號

城北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5年10月27日(金) 午前10時

議事日程

1. 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議員傷害等補償金支給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2. 서울特別市城北區再活用品販賣貸金管理基金設置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附議된案件

1. 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議員傷害等補償金支給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城北區廳長 提出) ……1面
2. 서울特別市城北區再活用品販賣貸金管理基金設置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城北區廳長 提出) …2面

(10時01分 開議)

○議長 柳成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事務局長 姜丙燮 사무국장 姜丙燮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7회 임시회중 상임위원회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으며, 시민복지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성북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議員傷害等補償金支給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城北區廳長 提出)

(10時03分)

○議長 柳成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심사한, 행정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최동환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委員會幹事 崔東煥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간사 최동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보면 95년10월16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하여 95년10월26일 행정위원회에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15조 및 15조의 2가 개정됨에 따라 본조례의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조례 조문 용어중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개정하고 조례4조 1항 후단에 사망 보험금은 사망전 상해보상금과 치료비를 지급한 경우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후 지급하며, 상해로 인한 장애 보상금 지급시에도 보상금 지급전 치료비를 지급하였으면 이미 지급한 치료비를 공제한 후 잔여금액을 지급하도록 신설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 요지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저희 위원회에서는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한 본조례의 개정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柳成烈 네, 행정위원회 최동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일괄질의·일괄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特別市城北區再活用品販賣貨金管理基金設置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城北區廳長提出)

(10時08分)

○議長 柳成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시민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시민복지위원회 권혁기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福祉委員會委員長 權赫麒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복지위원회 권혁기위원장입니다.

이번 제47회 임시회중 저희 시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성북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

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9월26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하여 1995년9월28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5년10월26일 시민복지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본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구청소속 환경미화원은 재활용품수집·선별 처리실적에 비례하여 장려금 및 후생복지 비용을 지급하고 있으나 동일한 노력을 하고 있는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도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 지급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2조 2호 재활용센타운영에 따른 수입을 신규재원으로 규정하는 것이며 조례안 제3조를 보면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 지급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본조례중 개정조례안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기재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바라옵건대 저희 시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柳成烈 네, 시민복지위원회 권혁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역시 일괄질의·일괄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
 겠습니다.
 제47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時13分 閉會)

○出席議員 40人

崔哲模	吳榮作	徐化錫
尹弘老	尹晚丸	金甲濟
李龍燮	朴景錫	權赫騏
俞鎮武	金珉奭	任泰根
金光植	金鈴基	安傑瑤
安敦洙	金振權	金壽榮
文京周	金榮植	李鍊垆
崔桂洛	金東殷	申在福
崔東煥	李承魯	許東翼

朴時俊	柳成烈	鄭昌萬
金順權	李大一	羅光洙
金南孝	宋夏星	高允根
趙基燦	柳興先	徐榮振
丘在永		

○缺席議員 2人

洪性濤 申宗鉉

○參席專門委員

專門委員	宋鍊
專門委員	崔石根

○參席公務員

總務局長	李均佑
市民局長	張壽吉
總務課長	田喜久
清掃課長	安明佑